

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 · 소프트웨어학부 학사운영 내규

제정 2020년 4월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 · 소프트웨어학부 학사운영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운영소위원회) 본 학과 대학원의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소위원회(이하 소위원회)를 둔다.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위임하는 자가 담당한다.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3인 내외로 구성한다.

- ①위원장
- ②학과장(위원장이 학과장과 다른 경우)
- ③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

제 3 조 (소위원회 소집)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회의를 개최한다. 회의는 위원장 혹은 학과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.

제 4 조 (소위원회 기능) 소위원회에서는 학과 내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
- ① 논문지도교수의 변경
- ② 학과 교수와 학생의 고충 처리
- ③ 기타 학과의 석·박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본 내규의 개정

제 5 조 (교과과정) ①학생의 교과목 지도는 지도교수가 한다.

②석사과정의 경우 공통과목을 제외한 4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세부전공분야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.

③세부전공분야란 현재 컴퓨터공학과 전임교수의 연구 분야와 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 분야이다.

제 6 조 (보충과목) ①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3학점 이상, 12학점 이하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하고 제 1학기 수강신청 전에 해당 학생 및 그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. 보충학점 부과자의 보충과목 선정에 대한 지도는 지도교수가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으로 학부 전공분야가 다른 학생 (9 ~ 12학점)
2.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으로 학부 전공분야가 유사한 학생 (3 ~ 6학점)
3. 박사 및 통합과정 입학생으로 학부 및 석사 전공분야가 다른 학생 (3~12학점)

점)

4. 하위 학위과정 졸업이 4년 이상 경과한 학생 (3 ~ 12학점)

5.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
②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칙 제22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 까지 더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종합시험) ①컴퓨터공학과 · 사이버보안학과의 세부전공분야 별로 전임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며, 이 가운데 3문제를 선택한다.

②제①항의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각 문제에서 70점 이상을 “합격”으로 한다.

③시험일은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다음 주의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정한다.

④시험일 이전에 출제교수와 응시학생의 접촉을 금하며, 출제교수가 자신을 출제위원으로 정한 학생을 알 수 없도록 한다.

제 8 조 (논문지도교수) 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제 1학기 이전에 정한다.

②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입학 전형 이전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지원해야 한다.

③석·박사학위 및 통합과정의 지도교수는 컴퓨터공학과 전임 교수가 한다.

④1인의 교수가 해당 연구실의 신입생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1년에 5인 이내,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을 합하여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는 각각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지도학생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및 유고

2. 1호 이외의 이유로 학생이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

3. 논문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포기하는 경우

제 9 조 (석사논문심사) 석사논문제출자는 심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이전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한다. 그렇지 못한 학생은 논문심사에서 제외한다. 심사위원 3인은 논문의 전공 분야에 따라 학과에서 배정하며, 심사 일은 해당학기 마지막 주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에서 지정한다.

제 10 조 (외국인사에 의한 박사논문심사)

①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가운데 1인 이상을 박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사로 선정할 수 있다. 단, 외국 인사란 한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며, 논문심사청구대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지닌 학계 혹은 산업계의 인사를 말한다.

제 11 조 (논문 제출 자격 취득) ①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 각 논문에 대해 심사대상자는 주저자로서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2008년 3월 이전 입학생)

1.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
2. 다음 조건 중의 하나
 - 가. 국제 SCI 학술지 논문 1편
 - 나.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 2편
 - 다.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 1편과 채택률 40% 이하인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
 - 라. LNCS 논문 2편: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판된 것에 대해서만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인정

(2008년 3월 이후 입학생)

1.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
2. 다음 조건 중의 하나
 - 가. 국제 SCI 학술지 논문 1편
 - 나.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:
IEEE(Computer Society, Communication Society)/ACM/USENIX 학회 본부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3년 연속 채택율 50% 이하인 논문
 - 다.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 2편
 - 라.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 1편과 채택율 40% 이하인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단, 논문 1편에 대해서는 논문이 투고되어 심사한 결과 사소한 수정 요청(minor revision)만 남은 시점에서 지도교수가 토큰을 사용하여 졸업을 앞당기도록 할 수 있으나, 토큰이 회수되지 않으면 지도교수는 다시 토큰을 사용할 수 없다.

(2014년 9월 이후 입학생)

1.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¹⁾
2. 다음 조건 중의 하나
 - 가. 국제 SCI급 학술지 논문 1편
 - 나.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:
IEEE(Computer Society, Communication Society)/ACM/USENIX 학회 본부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3년 연속 채택율 30% 이하인 논문

제 12 조 (논문주제발표)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심사 직전 학기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논문주제발표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) 제 2항으로 대체 가능

제 13 조 (논문등록) 전일제로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수료 후에는 논문등록을 하여 박사과정 학생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.

제 14 조 (논문대체제도) 인공지능·소프트웨어학부 사이버보안전공은 일반대학원 학부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을 시행한다.(인공지능·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은 별도 시행 안함.)

1. 기본 원칙

-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

2. 별도 기준

- 국제 컨퍼런스 논문발표

: SCOPUS 등재, 혹은 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목록에 포함된 국제 컨퍼런스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발표

제 15조 (대학원 학생조교) 전임교원의 연구조교로 지명된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의 공과대학 및 컴퓨터공학전공 실습실 학생조교의 신청 및 겸임을 일절 금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